『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요약 상품설명서

< 기본정보 >

최고금리	연 3.3%	기본이율(연 1.8%) + 우대이율(연 1.5%p)	
		- 가입기간 2 년이상인 경우, 총 원금 5 천만원	
		한도 내	
		- 자세한 우대금리 요?	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 가능		
최저가입금액	2 만원	최고가입금액	매월 50 만원 이하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x -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일부해지	X	- 해지할 때, 원금과 이	자 일괄 지급
일무해시 예금담보대출	_	- 해지할 때, 원금과 O - 납입액의 95%까지 기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문점은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 없음
	입금 건별로 해당기간 약정이율 지급
	1회차
	입금금액 * 약정이율 /12*12
이자계산방식	2회차
이사계선당적	입금금액 * 약정이율 /11*12
	3회차
	입금금액 * 약정이율 /10*12
	 ※ 정부고시에 따라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예금만기	별도 만기 없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중서 등 계약 서류가 교부됩니다.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통장 또는 중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품특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1.5%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의 2])

거주지역	по ни	alerakot il	특별시 및 광역시
전용면적	서울 · 부산	기타광역시	제외한 시·군
85 ㎡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 ㎡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 ㎡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2 거래 조건

☞ 이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기간이 중명의한다)을 빼고 세대주로서 제외)이 3천면 · 소득서류 총수입금액이	지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기산한 연령이 만 29 세 이 직전년도의 소득세법 상 종 반원 이하이고 소득세 신고,납부 이 기준: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 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기간이 1 년 미만이며 연환산함)	는 가입시점 현재연도(직전년도의
	구분	공통	비고
	기본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가입자격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중 ·소득금액중명원	단, 1 년 미만 소득자인 경우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사업·기타 소득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반기/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본)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_
		네류 : 병적중명서 네대조 이즈니르 : 조미드로드ㅂ /	ᇸᄀᇃᇄᅃᆝᆘᄜᆣᅼᆸ
		세대주 입중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입제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조건(연령, 연소득, 무주택인 세대주)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신규(이하 '전환신규'이라고 함)을 신청하여야 가입이 가능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1.12.31.까지만 가입이 가능함		

ㅇ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 만원이상 50 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ㅇ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저축금액 매월 50 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 만원 이하인 경우 50 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남입기간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ㅇ 납입원금 5,000 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 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 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 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p 우대금리 추가 제공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주택 소유 여부 및 취득 시기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본)의 재산세(주택) 부과시기로 판단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즁명서」(해지일로부터 최근 3 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분) 상의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소명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적용이자율 간주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통장 해지 전 직접 입중하여야 함 (2018.07.31 현재 세금공제 전, 단리식)

가입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적용금리
1 개월 이내	무이자	_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1.5%p	연 3.0%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		연 3.3%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임에도 해지 신청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중도해지 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위의 적용이자율 항목 참조)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만기 후 이자율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이자 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
적용세율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 (1.4%)) ※ 세율은 2015.7.1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비과세	○이 저축은 현재 일반과세 상품이나,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될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소득공제	□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¹⁾ 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영 주택청약총합저축, 가입은행에 소득균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용연도 2 월말 ²⁾ 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영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2) (예) 2017 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균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8 년 2 월 28 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무주택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필요서류: 무주택확인서(은행양식) □ 한도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 만원 한도)의 40%균제 (최대 96 만원) □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 시 소득균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제 2 항단서(청약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시 당새연고 납입분 균제제외) 및 재 87 조제 6 항제 1 호(5 년 내 해지 시 소득균제액 추정)는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통장 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추정세율 소득균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 만원 한도)의 누계액 × 6%(지방소득세 별도)

	□ 유의사항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9.12.31 납입분 까지임(관련 법령개정 시 변경 될 수 있음)
전환신규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함.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금리가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을 적용하며, 전환원금 입금 분은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됨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계좌부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지한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부활 가능 ①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 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②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③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해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계약의 해지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해지 불가
예금자보호 여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사항 예금보험광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없음 정부가 관리함

ㅁ 입금 관련 유의사항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o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 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 o 만 19 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 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 회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ㅇ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o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 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 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 개월이 경과하고 24 회를 납입하고 인정,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 개월이 경과하고 1 회를 납입하고 인정, 수도권은 가입 후 12 개월이 경과하고 12 회를 납입하고 인정(24 개월/24 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 개월이 경과하고 6 회를 납입하고 인정(12 개월/12 회까지 연장 가능)되어야 1 순위 자격이 발생되며, 납입인정회차(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o 민영주택의 청약 1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 경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 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 개월, 수도권은 가입 후 12 개월(24 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 개월(12 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경과하고, 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o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별도 면적선택 필요없음)
- ㅇ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 발송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방하여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임을 입중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이 저축의 이자율이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ㅇ 해당 예금의 일부인출 또는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ㅇ 타 금융기관 또는 제 3 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 ㅇ 비과세 및 소득광제 관련 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에 따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99-1111(서비스코드:예금상담 012)로 연락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 (080-933-1111)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kebhana.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